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4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 박대출·김은혜·배준영

권영세 • 이종배 • 박정하

임종득 · 김도읍 · 박충권

김형동 • 박성훈 • 최은석

구자근 • 이종욱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경쟁국 대비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신평사 및 국제기구도 우리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더불어 유이한 재정준칙 미도입국으로 남아있는 만큼 효과적인 건전성관리 수단 도입이 절실한 시점임.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저출산 · 고령화 충격에 대비하

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안 제86조의2 신설)
 - 1) 정부가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 2)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 재정수지의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 3)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 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안 제86조의3 신설)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2)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경우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

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전액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함.

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첨부(안 제87조제1항)

기존 법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조달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바, 이를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으로 구체화함.

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제4항)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 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30에 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① 정부는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이하 "관리재정수지"라 한다)의 적자 규모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고용보험기금
- 2. 국민연금기금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채무의 합이 직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 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내로 예산 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1. 제91조의 국가채무
- 2. 다음 각 목의 지방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나 기금으로 인수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 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 나.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 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 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6조의3(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 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전부를 제90조제4항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 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 증대 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재

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 중 "제출하고자 하는 때"를 "제출하려는 경우"로, "재원조달방안을"을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 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9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을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편성하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제4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용계획이 수립된 세계 잉여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2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제8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정
	건전화 대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① (생 략)	③ ~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86조의2(관리재정수지의 허용
	한도) ① 정부는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
	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합
	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호의 기
	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수
	지(이하 "관리재정수지"라 한
	다)의 적자 규모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
	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기금
	2. 국민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채무의 합이 직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
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는 관리재정수지의 적
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액의 100
분의 2 이내로 예산안 또는 추
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
다.

- 1. 제91조의 국가채무
- 2. 다음 각 목의 지방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나 기금으로 인수 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 <u>가. 「지방재정법」 제11조제</u> 1항에 따른 지방채
 - 나. 「지방재정법」 제13조제

 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

 채무
 - 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

<신 설>

<u>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u> <u>에 따른 채무.</u>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 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의3(관리재정수지 허용한 도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 경우 제9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2항 및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전부를 제90조제4항 각호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재 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 니하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 산안을 편성하여 제86조의2에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기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 증 대 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 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제7 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 ③ (생 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sim	4.	(생	략)
----	--------	----	----	----

⑤ ~ ⑨ (생 략)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50</u>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